

## 위 임 장

수임인 : 법무법인 한 누리 ([www.hnrlaw.co.kr](http://www.hnrlaw.co.kr))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4길 27, 431호 (서초동, 지파이브센트럴프라자)

(Tel : 02-537-9500, Fax : 02-564-9889, [hnrlaw@hnrlaw.co.kr](mailto:hnrlaw@hnrlaw.co.kr))

### ※ 위임인 인적사항

투자자 성명		생년 월일		보유 주식수	
주 소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추후 우편물 수령을 원치 않으시면 반드시 이메일주소를 알려 주시고, 괄호에 (O) 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물 수령을 원치 않음 ( ) / 계약서 우편 회신 원함 ( )

### ※ 승소금 수령시 지급받으실 계좌

은행명		계좌 번호		예금주	
-----	--	----------	--	-----	--

동원산업(주)의 주주인 상기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동원산업(주)와 (주)동원엔터프라이즈간 합병과 관련하여 공정한 매수청구권가액을 인정받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및 재판외의 업무를 위임(소송행위는 1심부터 3심까지)하고 위임인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을 수여합니다.

1. 동원산업(주)에 대한 합병반대의사 통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통지
2. 동원산업(주)와의 주식매수청구가액 증액을 위한 협의 및 이에 따른 매매계약서의 체결
3. 주식매수가액결정 청구를 위한 일체의 소송행위,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소의 취하, 복대리인의 선임, 목적물 및 판결금(화해금, 조정금 포함)의 수령,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상소의 제기
4. 상기 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필요한 행위(법원 제출용 위임장을 작성하기 위하여 목도장을 새겨 위임장에 날인하는 행위도 포함)

2022. . .

위임인

(인)

\* ①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

\*\* ②잔고증명서(22. 4. 6.기준), ③잔고증명서(22. 8. 4.기준) , ④거래내역서(22. 4. 6~ 22. 8. 8.)

## 사건위임계약서

위임인(갑) :

수임인(을) : 법무법인 한누리

사건의 표시

사 건 명	주식매수가액결정 신청 등		
당 사 자	위임인	상 대 방	동원산업 주식회사

위 당사자들은 위 표시 사건의 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갑은 을에게 위 표시 사건, 이와 관련한 상대방과의 협의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의 처리(이하 “위임사무”라 한다)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제2조 【위임한계】**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는 동원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원산업”)에 대한 합병반대의사 통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비롯하여 주식매수가액결정 청구에 따라 동원산업으로부터 증액된 매매가액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및 재판외의 행위(증액분 수령권한 포함)로 하며 소송행위는 1심부터 3심까지로 한다.

**제3조 【수권범위】** 갑은 을에게 따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위임장 또는 선임서에 적은 자격과 권한을 수여한다.

**제4조 【수임인의 의무】** 을은 변호사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 【자료제공 등】**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자료 또는 조회한 사항에 대하여 갑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착수보수】** 착수보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

**제7조 【성공보수】** ①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재판상, 재판외에서 결정된 금액이 주당 238,186원을 초과하는 경우 갑은 ‘주당 결정금액과 주당 238,186원의 차액(이하 “증액분”)에 보유주식 수를 곱한 금원(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포함)’에 아래 비율을 곱한 금원을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1) 소송이 제기되기 이전에 협의에 의한 증액이 이루어지는 경우 : 7% (부가세 별도)

(2) 1심이 제기된 이후 증액합의 또는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 10% (부가세 별도)

- (3) 2심이 제기된 이후 증액합의 또는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 13% (부가세 별도)
- (4) 3심이 제기된 이후 증액합의 또는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 15% (부가세 별도)

② 승소로 보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승소로 보고, 위 ①항에 정한 성공보수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1) 을이 위임사무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
- (2) 을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거나 제9조에 따라 을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

③ 성공보수의 지급방식

- (1) 증액합의 내지 증액결정시 상대방(동원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을이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을은 지급받은 금원 중 성공보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7일 이내에 갑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으로 한다.(지급지체시 지연이자율은 연 12%로 한다)
- (3) 만약 갑이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는 경우, 갑은 지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에서 정한 성공보수금을 을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으로 한다.(지급지체시 지연이자율은 연 12%로 한다)

**제8조 【비용부담】**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 등사료, 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는 그 전액을 을이 부담한다.

**제9조 【계약해지】** 갑이 이 위임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임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때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라도 을은 이 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다.

**제10조 【통지의무】** 을은 위임사무의 중요한 처리상황 및 그 결과를 갑에게 통지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갑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수지급의 지체】** ① 갑이 이 위임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을은 위임사무에 착수하지 않거나 그 위임사무의 처리를 중단하거나 사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을은 신속하게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료의 보관책임】**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위임 종료시 갑에게 수령할 것을 통지한 후 3개월 내에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을은 이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제13조 【지급보장】** ① 을은 이 위임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갑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제1항의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

리에 관련하여 보관하게 된 금전, 문서 또는 자료 등을 유치하거나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 을은 신속하게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인장조각】** 이 위임계약의 수행 상 필요한 경우, 을은 갑 또는 당사자의 인장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을은 사후에 인장조각 및 사용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비밀유지】** 을은 업무상 취득한 갑의 모든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업무수행상 필요하거나 법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중요사항의 결정】** 을은 합의안, 화해안, 조정안의 수락여부, 이미 제기된 소송의 취하, 화해, 합의, 상소제기 여부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갑과 동종의 처지에 속한 피해자들의 참여주식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동의를 얻어 처리하여야 하며 피해자들의 집합적인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을 경우 갑은 이러한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17조 【정보제공동의】** 갑은 을에게 제1조(목적)와 제2조 (위임한계)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정하는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제18조 【민법과의 관계】** 기타 위임사항에 관하여 이 위임계약서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2022. . . .

갑 : (인)

을 :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 김 주 영, 서 정 (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제3자 제공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소송계약체결에 따른 법원 등의 서면제출, 집단소송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고지사항 전달, 본인의사확인, 계약서 회신, 승소금 송금, 현금영수증 발행 등의 필요사항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기타 소송에 필요한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법률서비스 제공 요청일로부터 업무 완료시점까지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며, 각종 세무 관련 신고자료 또는 세무 관련 기관의 요청자료 등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사건 종결 후 5년 동안 수집된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4. 개인정보 수집 동의거부 사항
  - 의뢰인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동의를 거부할 경우 법원제출 서류 등의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되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 등의 세무사항 처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필수)

1.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법무법인 한누리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항목에서 고지한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등 관련기관	소송 수행 및 집행, 보수에 대한 세무처리 등 후속조치 업무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이용자가 피해를 당하였다고 입력한 항목, 휴대폰번호 등

2.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법무법인 한누리는 서비스 향상을 위한 관계법령에 따라 고객님의 동의를 얻거나 관련사항을 공개또는 고지 후 회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한누리의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와 그 업무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탁자	제공목적
케이티하이텔주식회사	SMS발송,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제공

3. 예외사항  
법무법인 한누리는 예외 사항에서도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의 근거에 의해 부득이하게 고지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본래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에 반하여 무분별하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구가 있거나,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4. 개인정보 수집 동의거부 사항
  - 의뢰인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동의를 거부할 경우 법원제출 서류 등의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되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 등의 세무사항 처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마케팅/홍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선택)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신규서비스 개발 및 마케팅 광고에의 활용, 접수중인 소송안내,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제공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이메일 주소,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목적의 달성 후 지체없이 폐기
4. 동의거부권 및 불이익
  - 개인정보의 마케팅/홍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하시더라도 소송진행에는 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마케팅 활용 서비스 안내 및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현금영수증발행 번호(휴대폰번호)

동의인 성명

(인,서명)